

# 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 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高 敬 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순사회복지지출은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출한 총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표로서 우리의 1998년도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 5348억원으로 국민소득(NI) 대비 17.20%이다. OECD회원국의 지출수준은 NI 대비 25%수준에서 수렴하는 국가간 평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회원국의 수렴수준을 기준할 때 68.8%에 머물고 있다.

수렴하는 이유는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이 높던 국가는 지출총액에 30%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스웨덴, 덴마크), 반면 낮던 국가는 또한 30% 이상의 자발적 민간지출(미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정)지출총액에 조세의 부담과 경감을 가감할 때 경감이 0.6%, 자발적 민간지출이 12.3% 각각 추가되어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어 OECD회원국의 1/3수준인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 들어가는 말

한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최근 OECD의 표면적인 관심거리이며 이와 관련한 총지출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궁극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이유는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up>1)</sup> 수준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등

의 국가는 복지선진국으로, 낮은 미국 등의 국가는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여 온 것에 대한 지표의 보완 때문이다. 그 배경은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낮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동안 한 국가의 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데 이용한 법정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체의 지출규모를 파악하는데 포괄범위가 협소하다는

1) 그 동안 '사회보장비'라 불렀던 Social Expenditure를 '법정'을 추가한 '법정사회복지지출'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 이유는 먼저 본 통계가 포괄하는 사회보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 총사회복지지출은 법정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 민간지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하고자 이렇게 명명(命名)하였다.

인식과 함께 각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문화 차이, 조세제도 등을 반영한 새 통계의 필요성이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결과 최근 OECD가 각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거시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s)이라는 통계를 개발하여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통계는 국가의 복지수준을 총체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계이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점은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사회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OECD추계방법에 따라 국내 첫 시도한 연구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2. 정의와 개념적 구성항목

이러한 필요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개념은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sup>2)</sup>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의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공제하여 얻은 실제의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복지 지출 수준을 순지출로 보아야 한다는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총(Gross)의 뜻은 사회급여수령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순(Net)은 총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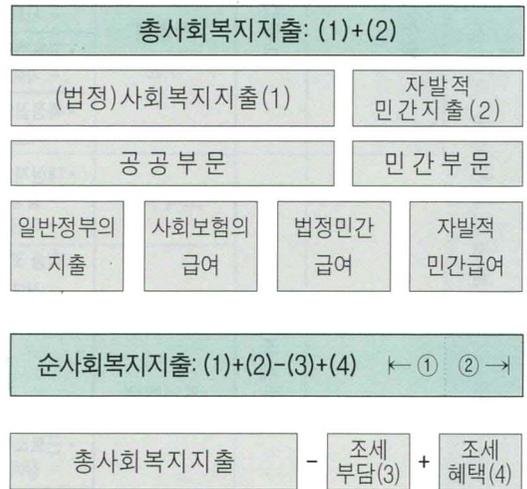
지출에서 이들 세금을 공제하고 조세혜택을 추가한 것이다.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는(그림 1)과 같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text{순사회복지지출} = \text{법정사회복지지출} + \text{자발적 민간지출} + \text{조세혜택} - \text{조세부담(이전소득간의 사회보험료부담 포함)}$$

여기서 순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은 조세의 부과와 감면의 크기에 따라 총사회복지지출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감할 것이다.

그림 1 총 및 순사회복지지출의 포괄범위 비교<sup>1)</sup>



주: 1) ①은 Tax>TBSPs(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인 경우, ②는 TBSPs>Tax인 경우임.

2) 총사회복지지출이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는(또는 처할)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민간 부문(법정뿐만 아니라 자발적 부문까지 포함)으로부터 수령하는 총괄적인 사회적 급여(Social Benefits)와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출'을 의미한다.

즉, 조세혜택(TBSPs: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sup>3)</sup>의 총액이 조세징수총액(직·간접세의 합)과 같다면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은 같을 것이다. 반면에 조세부담이 조세혜택보다 크다면(그림 1에서 ①부분), 그 차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결국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작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차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그림 1에서 ②부분)하게 되므로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크게 될 것이다.

〈표 1〉은 법정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순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개념적 구성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통계명칭별 포괄범위와 구성항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순사회복지지출의 개념적 구성항목

통계명칭		포괄범위	구성항목	
순사회복지지출	법정사회복지지출	공공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귀순복합동포보호, 국가보훈 급여 등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과 장애인, 가족복지, 보건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총사회복지지출	법정부문	· 법정퇴직금, 산전산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 급여 (장애인 등의 교통·통신요금 할인금액) <sup>1)</sup>	
			· 민간모금단체·종교단체의 복지사업 관련 지출	
		자발적 부문	· 기업재단의 지출 - 사회복지, 재해복구·예방	
			· 고용주의 자발적 급여 - 가족수당, 학비지원, 주택자금지원 등	
	조세제도	조세부담	· 대상자가 부담하는 직·간접세 추계 - 법정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액	
			조세혜택	· 각종 조세감면금액 추계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 장애인용자동차 면세금액 · 구입단계(특소세, 교육세) 면세금액 · 등록단계(취득세, 등록세) 면세금액 · 보유단계(자동차세, 면허세) 면세금액
				·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 장애자, 경로, 부녀자세대주, 기부금의 소득공제
·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회보험료 부담		·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 연금수령자의 지역의료보험료 부담액		

주: 1) ( )안은 OECD가 곧 포함할 예정임.

3) 정부가 사회적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재정적 조세혜택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초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정기적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공공부문의 자료는 공공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민간부문은 급여수령자의 전체 기초자료가 축적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전산자료, 선행연구자료,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4대사회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부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정부부문,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법정민간부문, 민간모금·종교단체 및 기업재단 등이 지출하는 자발적 민간부문, 그리고 정부의 조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재원은 4대사회보험의 각종급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농어촌특별회계,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출, 그리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법정퇴직금과 산전·산후휴가급여, 민간모금·종교단체·기업재단 등의 지출, 조세부담과 혜택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순사회복지지출 추계와 관련된 조세부담에는 먼저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

으로 조세혜택에는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를 경감하거나 소득세 과표금액을 공제하는 조세감면 공제제도가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세부담을 구성하는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그리고 관세 등이 있다. 이전소득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에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의료보험료를 들 수 있다. 다음 조세감면대상은 크게 비영리공익법인,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기업, 그리고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자<sup>4)</sup> 등이다.

### 3. 추계결과

추계결과는 추계순서와 같이 총사회복지지출을 언급한 후 순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 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망라한 총사회복지지출은 1998년 56조 1823억원으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sup>5)</sup>의 1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참고로 총사회복지지출은 <표 2>에서 보는

4) 사업소득자 중 연말정산대상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 후원수당을 받는 자이다(소득세법 제144의 2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5) OECD가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때 요소 GDP를 사용하고 있다. 요소GDP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을 의미한다. GDP에서 당해 연도에 부가된 부가가치만을 보려면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공제한 국민순생산(NNP, 이는 시장가격표시의 국민소득임)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재화와 용역에 간접세를 부과하므로 시장가격은 간접세만큼 높아지는 반면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경상보조금만큼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은 낮아진다. 결국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즉, NI=국민순생산-간접세+경상보조금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실제 생산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몫인 요소비용(factor cost)과 일치하는 순생산액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총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GDP보다 NI를 사용하고 있다.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지출과 법정민간부문의 지출의 합계인 법정사회복지지출에 자발적 민간 지출이 추가된 것이다.

각 부문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1998년도의 공공부문지출은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 민간지출이 43.2%를, 자발적 민간지출이 12.3%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민간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5.5%)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 1998년도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 5348 억원으로 NI 대비 17.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위에서 살펴본 총사회복지지출보다 NI대비 0.10%가 높은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의 사회복지와 관련 조세혜택이 부담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OECD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에서 우리의 조세혜택과 조세부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1995~1997년)의 조세혜택 금액이 조세부담금액에 비하여 약 2.7~3.5배가 높았다. 반면 1998년도는 조세혜택이 조세부담보다 약 26% 높는데 불과하였다. 이는 1998년도의 법정퇴직금의 급격한 증가(1997년 대비 2.1배, 약 13조원 증가)에 따른 소득세 부담과 이를 소득원으로 한 소비의 증가 및 간접세율의 인상(4%)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2. 우리 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1995~1998년)

(단위: 백만원)

구 성 항 목	1995	1996	1997	1998
공공부문 지출(A) <sup>1)</sup>	13,055,340	15,621,621	18,594,317	24,987,486
법정민간지출(B) <sup>2)</sup>	6,661,480	7,276,143	11,551,380	24,279,466
자발적 민간지출(C) <sup>3)</sup>	1,200,907	6,785,371	6,596,143	6,915,356
총사회복지지출(A+B+C)	20,917,727	29,683,136	36,741,839	56,182,307
NI 대비 %	7.15	9.30	10.76	17.10

- 주: 1)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의 급여
- 2) 법정퇴직금, 산전·산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 3) 민간모금단체, 종교단체, 기업의 자발적 급여

자료: 고경환 외, 『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3. 우리 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 규모(1995~1998년)

(단위: 백만원)

구 성 항 목	1995	1996	1997	1998
총사회복지지출(A)	20,917,727	29,683,136	36,741,839	56,182,307
조세부담(B) <sup>1)</sup>	378,094	414,984	640,223	1,334,515
조세혜택(C) <sup>2)</sup>	1,079,398	1,466,628	1,723,401	1,687,039
순사회복지지출(A-B+C)	21,619,031	30,734,779	37,825,019	56,534,832
NI 대비 %	7.39	9.63	11.08	17.20

주: 1) 직접세는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뿐이며 현행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간접세는 사회보험의 급여소득과 퇴직금의 소득에 대한 도 농가구의 평균간접세율로 추계함. 단, 연금수급자 중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의료보험료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2) 근로소득 공제제도에 따른 감세, 장애인용자동차세의 면세액, 장애인용수입물품 관세감면임. 단,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과 기업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제외함.

자료: 고경환 외, 『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4. 국제비교

##### 1) 법정 및 순사회복지지출 비교

OECD국가의 국민소득(NI) 대비 법정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과 같은 복지선진국가는 법정사회복지지출에 비해 순사회복지지

출이 낮은 경향을, 미국과 우리 나라와 같은 복지후진국가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각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법정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볼 때 덴마크가 약 40%, 핀란드와 스웨덴이 약 30%씩 작은 데 비해 미국과 우리 나라는 각각 약 40%와 15%가 오히려 컸다. 하지만 영국은 법정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법정사회복지지출과 순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1995년)

(단위: %)

	한국 <sup>1)</sup>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법정사회복지지출(A) <sup>2)</sup>	14.99 (100.0)	38.2 (100.0)	35.9 (100.0)	36.8 (100.0)	26.3 (100.0)	17.6 (100.0)
순사회복지지출(B) <sup>2)</sup>	17.20	24.4	25.7	27.0	26.0	24.5
증감률(C)(C=B-A)	2.21	△13.8	△10.2	△9.8	△0.3	6.9
증감률(C/A×100)	(14.7)	(△36.1)	(△28.4)	(△26.6)	(△1.1)	(39.2)

주: 1) 1998년 자료임. 1995년도 (법정)사회복지지출은 5.89%, 순사회복지지출은 7.21%임.

2) NI대비 %임.

자료: 고경환 외, 『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OECD, *Net Social Expenditure*, 1999.

이와 같이 국가간 법정사회복지지출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NI 대비 25%수준에 수렴함을 [그림 2]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두 통계에 대해 OECD국가와의 격차를 살펴보면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은 OECD국가들에 비해 63.4~70.5%정도이지만 법정사회복지지출은 39~8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NI대비 25%선에 수렴함에 비해 법정사회복지지출은 국가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간 비교 통계는 순사회복지지출이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표임을 알 수 있다.

OECD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수렴하는 NI대비 25%를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을 [그림 3]과 같이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낮고 (68.8%) 네덜란드가 기준국가(100.0%)이며, 미국은 수렴선 아래에(98.0%), 반면 영국(104.0%)과 스웨덴(108.0%)은 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각 국가별 자발적 민간급여의 규모와 조세제도의 차이 때문으로 이들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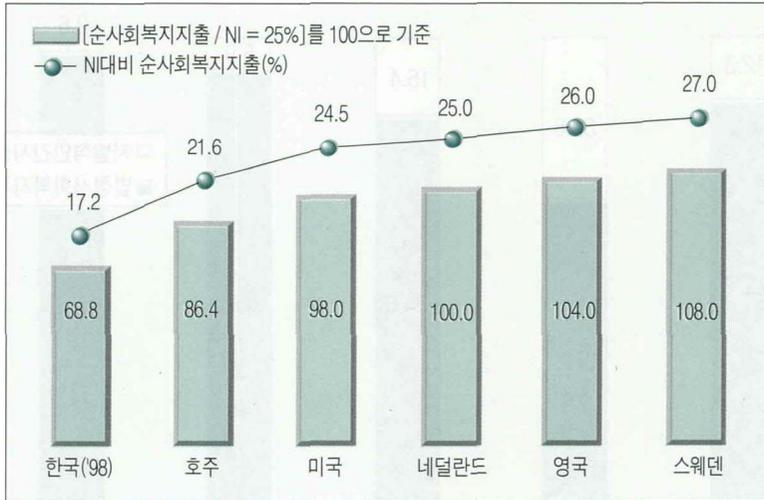
그림 2. 법정 및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비교<sup>1)</sup>



주: 1) NI대비 %임.

그림 3. 수렴수준(NI 대비 25%)을 기준으로 한 국제비교

(단위: %)



2) 법정 및 순사회복지지출간 차이발생 원인분석

(1) 자발적 민간급여의 차이

OECD회원국의 총사회복지지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법정사회복지지출이 67~97%, 자발적 민간지출이 3~33%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발적 민간지출의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은 각각 약 3%, 6%, 영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16%, 12%에 비해 미국은 가장 높은 32.8%이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법정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지만 자발적 민간지출이 높고 조세제도가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복지선진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크와 스웨덴은 각각 약 3%, 6%, 영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16%, 12%에 비해 미국은 가장 높은 32.8%이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법정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지만 자발적 민간지출이 높고 조세제도가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복지선진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표 5. 총사회복지지출을 구성하는 각 급여의 국제비교(1995년)

(단위: %)

	한국 <sup>1)</sup>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총사회복지지출(A+B) <sup>2)</sup>	17.10(100.0)	39.2(100.0)	39.1(100.0)	31.1(100.0)	26.2(100.0)
법정사회복지지출(A) <sup>2)</sup>	14.99(87.7)	38.2(97.4)	36.8(94.1)	26.3(84.6)	17.6(67.2)
자발적 민간지출(B) <sup>2)</sup>	2.10(12.3)	1.0(2.6)	2.3(5.9)	4.8(15.4)	8.6(32.8)

주: 1) 1998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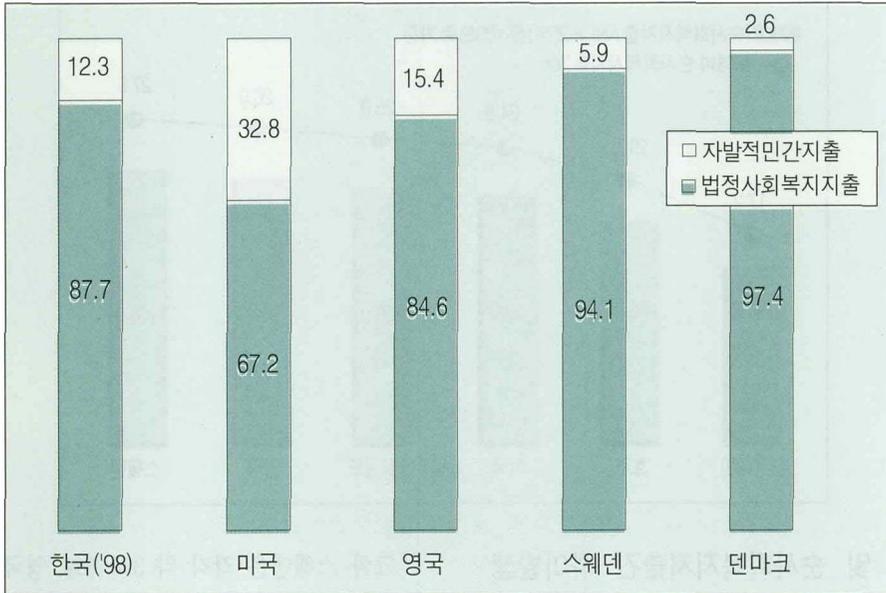
2) NI대비 %임.

자료: 고경환 외, 『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OECD, Net Social Expenditure, 1999.

그림 4. 법정사회복지지출과 자발적 민간지출의 구성비

(단위: %)



(2) 조세제도의 차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총사회복지지출에 부과되는 조세가 가장 낮은 반면 조세혜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먼저 조세부담측면을 <표 6>에서 보면, 덴마크나 스웨덴은 총사회복지지출에 30% 이상의 조세가 부과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7.6%와 17.7%가 징수되는 반면 한국은 2.3%로 우리의 부과정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약 6~36%수준에 불과하다.

다음 정부의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는 조

세혜택을 보면, 덴마크나 스웨덴은 총사회복지지출에 약 0.3% 이하가, 영국과 미국은 각각 1.3%, 1.1%인 반면 우리 나라는 3.0%로 높다. 즉, 우리의 조세혜택 정도는 이들 국가의 2.3~10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순사회복지지출이 총사회복지지출보다 높은 것이다. 즉, 총지출에 대한 순지출의 비율을 <표 6>에서 국가별로 보면, 우리 나라는 100.6%로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덴마크, 스웨덴은 각각 약 60%, 70%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고 조세혜택이 높은 미국은 약 94%수준이다.

국가간 조세감면액과 조세부담액의 차액이 총

표 6. 총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조세비용(1995년)

(단위: %)

	한국 <sup>1)</sup>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총사회복지지출(A) <sup>2)</sup>	17.10(100.0)	39.2(100.0)	39.1(100.0)	31.1(100.0)	26.2(100.0)
조세부담(1) <sup>2)</sup>	0.40(2.3)	14.9(38.0)	12.2(30.9)	5.5(17.7)	2.0(7.6)
조세혜택(2) <sup>2)</sup>	0.51(3.0)	0.1(0.3)	0.0(0.0)	0.4(1.3)	0.3(1.1)
순사회복지지출(B) <sup>2)</sup> (B=A - 1+2)	17.20	24.4	27.0	26.0	24.5
총지출에 대한 순지출의 비율 (B/A×100)	(100.6)	(62.2)	(69.1)	(83.6)	(93.5)

주: 1) 1998년 자료임.  
2) NI대비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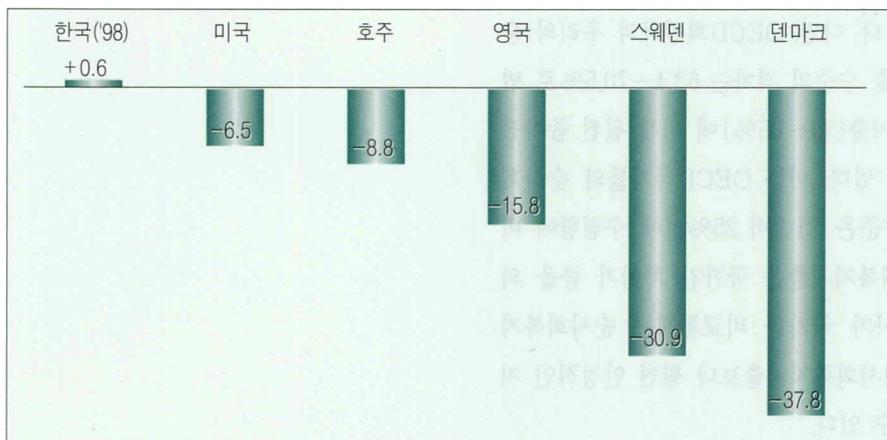
자료: 고경환 외, 『OECD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OECD, *Net Social Expenditure*, 1999.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그림 5)에 보여주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사회복지지출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제도가 가장 관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의 값을 가진 국가 중 미국

이 가장 낮은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총사회복지지출의 30% 이상이 조세부담으로 삭감되어 실질적인 복지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림 5. 총사회복지지출을 증감시키는 조세의 부과·경감차액의 백분율(1995년)<sup>1)</sup>

(단위: %)



주: 1) +는 조세혜택이 더 큼을, -는 조세부담이 더 큼을 나타냄.

## 5. 맺는 말

국가간 복지수준을 두 통계로 비교한 결과 법정사회복지지출은 차이가 상당히 컸으나 OECD가 처음 시도한 순사회복지지출은 차이가 거의 없는 복지수준의 평균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총사회복지지출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혜택은 더하고 조세부담은 공제한 OECD회원국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국민소득(NI) 대비 25%의 수준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은 NI 대비 17.2%로 OECD회원국 수렴수준(25%)의 68.8%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사회복지지출로 비교할 경우 중하위의 복지국가이던 미국이 순사회복지지출로 조명할 경우 복지선진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NI 대비 24.5%)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현행 OECD에 통계제출국가(13개국)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통계를 제출하지 않은 15개국을 감안할 때 그 순위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다만, OECD회원국과 우리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격차는 63.4~70.5%로 법정사회복지지출(39~85%)에 비해 훨씬 좁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의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은 NI대비 25%선에 수렴함에 비해 법정사회복지지출은 국가간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간 비교통계는 순사회복지지출이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훨씬 안정적인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법정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순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한 국가는 대부분 국민의 기초보장 제도가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있으며 복지급여에 관한 조세부담이 높은 국가이다. 반면에 증가한 국가는 비제도권의 역할이 높고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복지선진국가들이며, 후자는 한국과 미국 등 복지후진국이 해당된다. 또한 후자의 국가는 제도권의 지출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발적 민간부문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으며 이전소득자에 대한 직접세 부과와 조세경감 정도가 비슷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었다.

순사회복지지출수준이 우리의 현 소득수준(1998년 6,947불)보다 약 4~5배 높은 OECD회원국의 70%정도라는 것은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로 비교한 결과 그들의 1/3정도였음과 비교할 때 금석지금을 금할 수 없는 지표이다. 다만, 순사회복지지출의 40%를 차지하는 법정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NI 대비 10.3%) 우리의 지출수준은 OECD회원국의 약 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